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#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3월 8일
-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소방 인력 증원 및 도정현안 등을 반영한 정원 조정 사항을 조직 효율성 및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  - 총 정 원 : 4,700명 → 4,819명 (+119명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821명 → 1,823명 (+2명)
  - 소방공무원 정원 : 2,728명 → 2,845명 (+117명)
  - 교육공무원 정원 : 43명(변동 없음)
  - 의회사무처 정원 : 89명(변동 없음)
  -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19명(변동 없음)

○ 소방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(안 별표 2)

- 소방정 이상 : 2% 이내 → 1% 이내
- 소방령 : 4% 이내 → 3.5% 이내
- 소방위 : 9% 이내 → 12.5% 이내
- 소방교 : 30% 이내 → 29% 이내
- 소방사 : 27% 이상 → 26% 이상

○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
- 일반직 : 1,684명 → 1,686명 (+2명)
  - ▶ 4급 이상 (△1명), 5급 이하 (+3명)
- 소방직 : 2,728명 → 2,845명 (+117명)
  - ▶ 소방정(+1명), 소방령 이하(+116명)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과 U대회공동유치위원회 인력과건에 대한 조직정비의 필요성이 생겼으며,
- 「소방화재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및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충북안전체험관을 설치와 소방력 기준대비 ‘현장부족인력 연간 보강계획’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원조정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